

광고촬영장 등의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I. 목적

이 지침은 촬영장 등 광고제작 현장에서 광고주, 기획사, 협력업체 제작사, 출연자,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용어의 정의

1. 제작진이란 광고영상/광고포스터 등 제반 광고물 및 온라인/오프라인 캠페인 등 광고주의 제반 홍보활동(이하, 이를 모두 통칭하여 “광고”라 한다)을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광고” 제작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일체의 사람들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자를, 아동은 13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출연자란 “광고”를 위해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등으로 제반 용역을 제공하거나(용역 제공의 형식, 방법은 위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일체의 용역을 의미한다) “광고”에 자신의 초상, 퍼블리시티권 등의 사용을 허락하는 자 또는 “광고”에 출연하는 일반인(모델 에이전시, 모델 소속사 등과 계약관계 있는 일반 모델은

물론, 에이전시/소속사 등과 계약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인 포함)을 포함한다.

III.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광고주, 당사가 고용한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프리랜서와 협력사 등 제작진, 성인출연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자 등 광고제작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적용된다.
2. 이 지침은 광고제작 스튜디오, 외부촬영지 등 광고가 제작, 실행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준수되어야 한다.

IV. 일반원칙

1. “광고” 제작, 실행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는 해당 “광고”의 제작, 실행 책임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광고주, 기획사, 제작사, 출연자, 보호자 등 모든 “광고” 제작/실행 참여자들의 공동 책무이다.

V. 사전조치

1. 광고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광고”의 기획의도, 촬영형식, 주요내용, 출연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광고제작진은 광고 제작·촬영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의견이 다르거나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에도 제작진은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광고출연 이후의 상황이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하도록 한다.

3.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제작·촬영 조건 등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작진은 아동·청소년의 의사표시에 반하는 출연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청소년 출연자와의 계약서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VI. 제작과정 상의 조치

1.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

- (1) “광고” 제작 시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출연자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없다. 다만, 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 (2) 광고물 제작 시 15세 이상의 청소년 출연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이상의 청소년 출연자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없다. 다만, 15세 이상의 청소년 출연자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출연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다.
- (3)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학습권, 건강권, 휴식권 등 인권보호

- (1)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학습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제작·촬영시간은 가급적 학교 수업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정하고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2)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의하여야 하며, 촬영 간 충분한 휴식시간, 수면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제작진은 아동·청소년의 제작·촬영시간이 가급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연되는 경우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3. 성관련 보호 등

- (1) 아동·청소년은 성적 권리가 있는 하나의 인격체임을 이해하고, 성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 (2)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 과도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제작진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광고” 제작에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출연용역을 제공하게 하거나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초상/퍼블리시티권을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아동·청소년의 신분으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 흡연·음주 장면 등은 촬영하지 않는다. 또한, 제작진은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에게 흡연·음주 문화가 일상적인 상황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설명한다.

4. 신체접촉 및 언어표현

- (1) 건강과 안전 등 위급한 상황 등을 제외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2) 아동·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그에 맞는 바른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동기부여 등을 이유로 과도한 충격, 공포, 불안감을 조성하는 폭력적인 언어표현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 (3)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나이, 성별, 장애, 인종 혹은 국가, 종교,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13세 미만 어린이 광고 제한사항

- (1) “광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 ②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 ③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 ④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 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 ⑤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 ⑥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 ⑦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 또는 건강을 저해하는 표현
- (2) 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광고”는 어린이의 판단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
 - ②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 ③ 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 (3) 어린이 대상 “광고”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어린이 대상 “광고”는 상품을 작동시키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실행하여야 하며, 가격을 고지하는 때에는 상품과 부속품의 가격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6. 인터뷰 출연

- (1)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인터뷰를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을 확인한다.
- ①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가 인터뷰의 목적과 성격을 알고 있는가?
 - ②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가 인터뷰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가?
- (2) 아동·청소년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만큼 그들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다.

- (3) 아동·청소년과 인터뷰하는 경우 제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해서는 아니 되며, 그들의 의견을 왜곡하여 방송해서는 안된다.

VII. 안전과 보호

1. 광고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안전은 프로그램 제작보다 우선한다.
2. 아동·청소년이 단체로 출연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인솔자나 안전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정서적, 물리적으로 안전한 상황에서 제작 촬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3. 아동·청소년이 광고 출연으로 인해 사이버 괴롭힘, 악성 댓글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4. 영유아(0세부터 6세 미만) 출연자의 경우 촬영 현장에 부모 등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하며, 이동, 대기, 촬영 등 제작에 필요한 시간이 신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노출로 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침해 사실을 안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제작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출연자가 요청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